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운영 내규

2021. 11. 1. 제정

2022. 3. 1. 개정

2022. 9. 1. 개정

<대학원행정팀>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65조에 따라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 제도”라 함은 석사과정 학생이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과 상응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체 실적물”이라 함은 대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학생이 석사학위논문 대체를 위해 제출하는 실적물을 말한다.
3. “추가 수료요건”이라 함은 대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학생이 수료를 위해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제3조(대체 제도의 시행) ① 대체 제도는 대체 실적물과 추가 수료 요건을 포함하여 석사학위논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체 제도는 대학원 학과 학사주관관리대학의 장이 신청하며, 시행 학기 이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체 실적물 및 추가 수료 요건의 세부 사항 ([별지서식 1])
 2. 대체 실적물 심사 기준 및 절차 ([별지서식 1])
 3. 대체 제도 시행의 사유와 기대효과 ([별지서식 2])
 4. 기타 대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④ 대체 제도를 시행하는 학과(전공)의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적용대상) 대체 제도의 적용대상은 학과(전공)별로 달리 정하되, 각 학과(전공)별 제도 시행 학기에 재적 중인 학생(수료생 미포함)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취소) ① 대체 제도를 신청하려는 학생은 수료 이전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체 제도의 신청은 학생별 1회에 한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체 제도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6조(대체 실적물) ① 대체 실적물은 학문 특성을 반영하여 학과(전공)별로 다르게 정한다.

② 대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에 대체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체 실적물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3조 및 제

45조의 학위논문제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과 내규로 추가적인 대체 실적물 제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학위청구 제출 서류) ①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대체 실적물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의 양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서류의 양식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심사용 대체 실적물 3부 (학·연·산협동과정 4부)
2. 대체 실적물 심사 신청서
3. 대체 실적물 심사위원 추천서
4. 대체 실적물 외부 심사위원 명단
5. 대체 실적물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6. 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② 대체 실적물의 종류에 따라 표절검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제6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 여부는 시행학과의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 9. 1.>

제7조(심사위원회) ① 대체 실적물의 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3. 1.>

③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1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대체 실적물 심사는 석사학위논문 심사에 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추가 수료요건) 학과에서는 대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료요건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실태점검) ① 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동 제도를 시행하는 학과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대체 제도의 운영이 미비한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과의 대체 제도 시행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내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동 내규의 제정 이전의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운영은 동 내규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개정, <별표 1> 경영학과(Business Analytics), 스마트도시학과, 기능성식품과학과 내용 보완 및 영어영문학과(영어학), 독어독문학과, 중일어문학과, 정치외교학과, 통계학과, 수학과(Mathematical Data

Science) 신설)

2. (적용례) 경영학과(Business Analytics), 스마트도시학과, 기능성식품과학과의 대체 실적물 및 추가 수료요건은 각 학과별 시행학기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영어영문학과(영어학)의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시행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의2 신설, <별표 1> 독어독문학과 추가 수료요건 시행, 교과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제도 시행)

<별표 1>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시행 현황

주관대학	학과	전공	대체 실적물	추가 수료 요건	시행학기	비고
경영대학	경영학과	Business Analytics	캡스톤 프로젝트 보고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프로젝트’ 8학점 이수	2020-1	
공과대학	스마트도시학과	-	리빙랩 프로젝트 보고서	‘스마트시티와 리빙랩 설계’ 이수 (B학점 이상)	2020-2	계약학과 (재교육형)
과학기술대학	기능성식품과학과	-	아래 5개 ⁽¹⁾ 중 1개 이상	‘캡스톤 디자인’ 6학점 추가 이수	2020-2	계약학과 (재교육형)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캡스톤 페이퍼	6학점 추가 이수	2021-2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	번역물 및 번역보고서	번역관련 수업 6학점 이상 이수	2022-1	
문과대학	중일어문학과	-	아래 5개 ⁽²⁾ 중 1개 이상	9학점 지정 과목 이수	2022-1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	연구보고서	6학점 추가 이수 및 워크숍 참가	2022-1	
정경대학	통계학과	-	자기주도 프로젝트 보고서	3학점 추가 이수	2022-1	
이과대학	수학과	Mathematical Data Science	캡스톤 보고서	‘프로젝트’ 이수 및 GPA 3.25 이상	2022-1	
사범대학	교과교육학과	수학교육	수학교육 프로젝트	6학점 추가 이수	2022-2	

(1) 기능성식품과학과: 특허 출원 /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신청 / 기능성표시제 인허가 신청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허가 / HACCP 또는 GMP 인증

(2) 중일어문학과: 창작·번역물 / 교재 / 연구·조사보고서 / 캡스톤디자인 보고서 / 제안서

[별지서식 1]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시행(안)

대학원 _____학과

1. 개요

시행 학과		시행 전공	
시행 학기		적용대상	
대체 실적물			
추가 수수료요건			

2. 대체 실적물 및 추가 수수료 요건 상세

대체 실적물(필수):

추가 수수료 요건(시행 시):

3. 대체 실적물 심사 기준 및 절차

4. 대체제도 시행사유 및 기대효과 : 별지

20 . . .

대학원 _____학과 주임: (인)

_____대학(부)장: (인)

[별지서식 2]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시행 사유 및 기대효과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사유

--

2. 기대효과

--